교직원 A는 2024.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시겠다면서,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 시켜 달라고 합니다. 교직원 A의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나요?

답변 · No

연말정산 대상자로서 무조건 해야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특자료에 대한 명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신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우리가 신고하는 연말정산에 **과한 소득자료는 "근로소득**"입니다. 국가의 여러 소득종류 가운데 일부인 '근로소득'일 뿐입니다.
- 교직원 A는 5월에 본인이 다른 소득과 합해서 종합소득신고 여부는 개인 선택시항이며, 근로소특신고는 원천장수의무자의 기관 의무시항입니다.
- 공제 자료 미제출 시, 기본 (인적)공제만 반영하여 작업·제출 하시면 됩니다.

- ① 2023년도 중간에 휴직하여 2023년도 급여총액이 500만원이 안되는 교직원이 배우자 소속기관에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리겠다며 연말정산 작업 대상자에서 삭제해달라고 합니다.
- ② 2023년도에 중간에 사망한 교직원이 있습니다.
- ③ 2023년도 무급휴직으로 급여총액이 'O원'인 교직원이 있습니다. 위 세가지 경우 모두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③번을 제외한 나머지 ①, ②번은 모두 하셔야 합니다.
- ① 번의 경우, 휴직중인 기관에서 연말정산 대상자로 올라가더라도 배우자 소속기관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신고 누락을 하지 않고 추후 복직시 건강보험료 등 정산 등 얽힌 많은 정보활용으로 쓰이므로 개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 받지 않고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 작업을 처리후 신고하면 됩니다.
- ②번의 경우, 사망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유가족분께 연락하셔서, 해당 근로기간 동안의 소득공제 자료를 받아서 작업하셔야 합니다. (연락이 안될 경우, 기본공제로만 등록 처리) 환급세액이나 추징세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거나 징수하시면 됩니다.
- ③번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삭제하십시오.

#

2O23년도 중도에 퇴직한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중도정산하여 환급/추징이 완료되었습니다. 중도정산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나요?

-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 중도 퇴직 시, 정산을 위한 공제자료 제출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반영하여(인적공제) 중도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임시/부정확한 자료]
-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공제자료 중빙등의 공제내역에 반영하여야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으므로 가(假)정산만 실시하게되고, 추가적으로 더 지급될 수 있는 소득자료 금액까지도 모두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중도정산했다해서,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소득자료를 넘기는 행위는 없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2023년도 근로소득명세서란 이름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4 교직원 A는 '외국에서 2개월 살아보기' 체험으로 국내에 있지 않습니다. 연락이 안되어 서류 제출을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mark>공제자료 없이</mark>, 기본공제(당시자 인적공제) 대상자 자료로만 연말정산 작업 **하십시오**.
- 업무처리 시, 개인적인 시연까지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법에 명시된대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 국내에 체류하는 가족들을 동원해서 기관에 서류제출을 하시든 공인인중서를 통해서 외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서 담당자 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보내는 그건 근로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 소관기관의 업무담당자께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작업을 진행하시되, 연말정산 대상자로 누락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이 끝난 후, 종합소특신고기간(5월)에 근로자가 개별신고 할 수 있음

₽

2023년 9월부터 4개월동만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교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를 월활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하므로 중도 채용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쪼회기간을 잘 설정하여 과다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 종전근무지가 있는지 확인 요함.
- 다만, 근로제공기간과 관계없이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6 │ 근로자 A는 이중 근로자이다.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답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주된 근무지 원 천징수의무자의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기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합산하여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한다.
 -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질의7 계약제교원 A는 2O23.2월만 A고등학교에서 퇴직하였다.

경우 ① 2023.3.~2023.12.까지 B고등학교 근무

경우 ② 무직(A고등학교 퇴직후 근로 하지 않음)

경우 ③ 일반 기업체 입사

답변 - 주(主)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합산신고 "

- 경우 ① : 주 근무지 B고등학교 ,경우 ② : 주 근무지 A고등학교, 경우 ③ : 일반 기업체

필의8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각각 신고한 경우

계약제교원 A는 2023.1.~8.까지 B고등학교에서 근로후 퇴직후 2023.10.~ C사업장 입사 근무중 2024.1. B고등학교와 C사업장에서 각각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됨

답변 - 관할 세무서에서는 2024.5. 계약제교원 A에게 종합소특신고 대상자로 분류하여 통보하게 됨.

계약제교원 A입장는 2024.5.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홀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하여,
 서로 다른 2곳의 소득자료를 합산하여 최종 확정신고를 해야함.

연말정산 대상자 누락의 경우

2023.2. 퇴직한 계약제교원 A는 2024.5.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하러 관활 세무서에 갔으나, 세무서에서는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연말정산 신고가 누락 된것을 알게됨.

답변

- 이를 누락한 학교에서는 관할세무서에 누락된 계약제교원 A의 근로소득 내역을 통보 해줘야함. 홈택스-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또는기한후제출)
- 이후 계약제교원 A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처리가 가능하게됨.

필의

A 교직원의 부모가 공무원연금 수령자 인데 인적공제 대상 등록 가능 한지요?

10

답변 - 연금생활자인 A교직원의 부모 본인만 확인이 가능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콜센터 문의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누리집-〉연금복지포털-〉[자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 메뉴 활용

주민등록표등본은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소특공제신고서에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란에 전년과 동일에 표시하여 제출한 경우 주민등 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개정안 2024.

(9쪽 중 제1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1 [1.5 [0] 0] 0 5 5 5 5	11 - 1 - 1 - CEOC - 1 C 1 - 1 - 1 - 1 - 1 - 1 - 1 -	I LO I EOIL O	
소득자 성명	이강모		주민등록번호	760101-1*****
근무처 명칭	한강건설(주)		사업자등록번호	123-81-****
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2023.1.1.~2023.12.31.		감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변동		분납신청 여부	[]신청 []미신청
워처짓수세액 선택	[0]120% []100% [180% ※ 그로소등자 보인이 원하는 경	9 매원 워처지수하느	세액을 번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중빙서류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학교장)에게 제출한 중빙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O23 원천징수의무지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지 397쪽

- ※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할 수 있음
- ※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증명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2O23년 연말정산 소특·세액공제 요건표

구분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 요건		비고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본인	×	×	×		
기본공제	배우자	×	0	×		
	직계존속	60세 이상	0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63.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0	×		2003. 1. 1.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0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0	0	0	1963.12.31. 이전 2003.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0	0	0	
	위탁아동		0			
25	장 애 인					
추가공제	경로우대		1953.12.31.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배우기				
2551	한부모	ПН				
	연금보험료 공제	7				

^{*}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O23년 연말정산 소특·세액공제 요건표

구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		
		나이요건	소득요건	비용만 공제	비고		
특별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	:=	0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	0	0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8세이상)		0	0	_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위탁아동·손자녀 포함)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보장성보험료	0	0	0			
	의료비	×	×	0			
특별 세액공제	교육비	×	0	0	직계존속 제외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	0	×	기본공제대상자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	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紲

원천징수의무지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지) 확인시항

-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시항(연말정산 이전) 29쪽
- 2.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시) 31쪽
- 3. 연말정산 과디공제주요 항목 32쪽
- 4. 잘못된 소득 세액공제에 따른 기산세 부담 39쪽

2023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24쪽

○ 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정환급시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함. 다만, 회사 전체적으로 환급세액이 많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기가 어려운 경우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신청 가능

○ 분납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음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월 급여 지급시 전액 원천징수